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. 11. 16 선고 2021가단163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1. 16.

주 문

1. 이 사건 소 중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6. 8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.
2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 - 가. 소외 D와 피고 B 사이에 2020. 10. 6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 - 나. 피고 B은 소외 D에게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20. 10. 8. 접수 제163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 - 다. 피고 C은 피고 B에게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21. 6. 8. 접수 제10357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 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소외 D과 피고 B 사이에 2020. 10. 6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 B은 소외 D에게
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20. 10. 8. 접수 제163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
이행하고,
나.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21. 6. 8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 C은 피고 B에게
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21. 6. 8. 접수 10357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
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[다만, 소외 D의 재산처분행위가
사해행위로 취소되어 피고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됨에 따라 그에 기초한 피고 C
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말소되어야 하는 것일 뿐, 사해행위를 기초로 수익자나 전득자가
한 법률행위가 직접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, 이 사건 소 중 피고 B과 피고 C
사이에 2021. 6. 8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.]

판사 이상덕

별지